지식경제부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1년 6월 8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무역구제정책팀 김용채 과장(02-2110-5552), 권영희 사무관(5552) 김대영 사무관(5554)	

한국, FTA협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반덤핑 조사 등의 절차 및 기준 마련 제안

- 제11회 서울국제포럼이 6.8(수) 코엑스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려 -

- 美, 中, EU, 호주, WTO사무국 등 국내외 무역구제 전문가 120여명 참석 -

□ 지식경제부(무역위원회)는 '11. 6. 8(수) **김정관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무역구제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11회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힘

○ 김정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금번 포럼이 **FTA협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집중 논의하여줄 것을 당부하였음

○ FTA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절차 및 기준으로 인한 **기업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체결될 FTA 협상**에 있어서도 무역구제분야에서 만큼은 **효율적 협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임

□ 서울국제포럼은 우리나라 주도로 '98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세계에서 유일한 무역구제 분야의 정기 포럼**으로,

○ 특히, 올해에는 한EU FTA 발효, 한미 FTA 비준 등을 앞두고 **미국, 캐나다 등 6개국* 12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FTA와 무역구제 조치의 관련성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음.

*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상무부 차관보), **캐나다**(국제무역재판소 부위원장), **호주**(관세청 부청장), **중국**(상무부 공평무역국 부국장), **인니**(반덤핑위원회 부위원장), **WTO**(무역규범국장) **EU**(통상총국 과장) 등

* 참석국가(6개국)의 위상 : 세계 무역의 51%('10년 약4,547억불), 세계 무역구제 조사 건수의 43%('95'10.6 누계, WTO) 차지

□ **WTO, EU, 한국** 등이 FTA 효과를 제한하지 않도록 **무역구제조치 발동 요건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입장인 반면 **미국, 호주** 등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을 선호**하는 바, **이번 포럼를 통하여 공통의 기준 마련을 모색**

○ **(WTO 사무국)** 무역구제 부문이 ①**WTO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②**무역구제조치 발동을 금지**하는 경우, ③**WTO와 다른 절차·기준을 규정**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 무역구제조치 발동 금지 또는 WTO와 다른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무역구제 부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 **(수출 or 내수중시)** 수출을 중시하는 **한국, EU** 등은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적용** 등 **WTO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 내수시장을 중시하는 **미국, 호주** 등은 **현 WTO협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FTA를 규율하자고 주장하였음

* 제로잉: 덤핑마진 산정시 정상가격(내수가격)에서 수출가격을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부의 마진을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하여 덤핑마진이 높아지도록 계산하는 것

* 최소부과원칙: 최종적으로 부과될 반덤핑관세를 결정할 때,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수준(산피율) 중 낮은 것을 선택하여 부과

○ **(한국)**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무역구제조치의 남용으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 WTO룰을 훼손하지 않도록 **FTA협정상 무역구제 부문에 대한 참고기준(Benchmark Standard)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한편, 포럼에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3~5년) 종료** 후 **계속 부과 여부를 판정(再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그동안 국내업계는 WTO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각국 재량하에 일관성없이 재심판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불만을 제기하여 왔음

○ 각국은 재심관련 **Best Practice 확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WTO도** 기준 마련시 이를 **반영**하여줄 것을 촉구하였음

□ 포럼과는 별도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Business Dialogue"를 개최**하였음

* 포스코, 하이닉스반도체,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40여개 업체

○ 금번 포럼에 참석한 국가들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받는 **반덤핑 조사의 47.8%, 상계관세조사의 88.2%를 차지**

* 對한국 반덤핑 조사 ('95~'10.6, 총 268건) : 중국(31건), 미국(29건), EU(28건), 호주(21건), 인니(11건), 캐나다(8건) 등 총 128건

* 對한국 상계관세 조사('95~10.6, 총 17건) : 미국(8건), EU(7건) 등 총 15건

○ 특히 국내 철강업계는 'Business Dialogue'를 통해, **WTO반덤핑 협정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는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과

- **같은 철강제품에 대해 15년 이상 덤핑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제소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함

□ 금번 포럼을 주최한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 금번 포럼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규정이 FTA협정별로 다르게 규정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 향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가 활발한 **개도국들도 폭넓게 초청**하여 **동 포럼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나가는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힘

※ <별첨1> 제11차 서울국제포럼 개요
<별첨2> 주요국 발표자료 요약
<별첨3> FTA협정문별 WTO 규정과 차별조항

별첨 1 제11차 서울국제포럼 개요

1. 행사개요

□ **일시/ 장소 : '11.6.8(수) 10:00~20:00, 코엑스 인터콘호텔(그랜드볼룸 105호)**

□ **주제 : '최근 무역구제 이슈와 전망'**
(Recent Issues affecting trade remedy systems and prospects for the world's trade remedy systems)

□ **참석자** : 국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 및 전문가 **약 120여명**

○ **(국 외)** WTO 무역규범국장, 美 국제무역위원회 위원, 美 상무부 수입행정처 차관보, 加 국제무역재판소 부위원장, 中 상무부 공평무역국 부국장, 호주 관세청 부청장, 인니 반덤핑위원회 부위원장

○ **(국 내)** 김정관 지경부 차관,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무역위원회 위원, 교수·회계·법무법인 등 민간전문가

2. 주요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10:00~10:10	**Opening Session** · 개회사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 축사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
10:10~10:30	**포토세션**
10:30~12:30	**Session I : F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 · 발제자 **Johann Human** (WTO 무역규범국장) **이재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해외 참석자 전원
12:30~14:30	**오찬 (COEX ASEM Hall)**
14:30~16:30	**Session II : 재심관련 이슈들** · 발제자 **임승윤** (무역조사실장) **R. Cunningham**(美 Steptoe & Johnson LLP 변호사) · 토론자 해외 참석자 전원
16:30~16:40	**폐회식**
17:30~19:30	**Business Dialogue & 만찬 (COEX ASEM Hall)**

3. 포럼 주요 참석자

성 명	소속 기관	직 책
Johann Human	WTO	무역규범국장
Charlotte R. Lane	美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위원(Chairman, 차관급)
Paul Piquado	美 상무부	차관보
Serge Frechette	캐나다 CITT (Canada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부위원장
Neil Mann	호주 관세청	부청장
Joko Wiyono	인니 반덤핑위원회	부위원장
Yu Ben Lin	중국 상무부 공평무역국	부국장
Wolfgang Muller	EU 집행위 통상총국	무역구제과장
Richard O. Cunningham	美 Steptoe &Johnson LLP	대표(Senior Partner)
이재민	한양대 로스쿨	교수

별첨 2 주요국 발표자료 요약

1. FTA에서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각국의 견해

□ 주요 쟁점

○ 관세장벽의 제거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FTA체제**하에서 **상대국의 수출을 규제**하는 반덤핑/상계조치/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기존의 **WTO체제하의 통일된 규범체제**에서 **FTA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무역구제규범체제*가 바람직한지** 등을 논의

* FTA별로 새로운 조치수단(양자세이프 가드)의 도입여부, 조치수단별 발동요건, 발동내용, 절차 등을 상이하게 규정

□ FTA에서의 무역구제규범의 양면성

○ **(무역구제제도의 기능) 양자세이프가드·특별세이프가드**의 도입을 통해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기능 수행하는 반면,

- 협의규정·통보규정·특정조치에 대한 한계규정·분쟁해결 규정을 통해 양자간 **수입규제조치발동을 어렵게 함**으로서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양면성**을 지님

○ **(무역구제제도의 다양성) FTA가 양자적 협정**이라는 본질상 **FTA상 무역구제제도의 복잡·다양성은 불가피**하나,

- 각국 기업들의 **혼란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범관행 확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 다만, FTA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모범관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각국 입장이 상이**

□ 모범관행에 대한 각국의 의견

○ (한국 등)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등**을 **모범관행에 포함**시켜 **WTO 협정문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자는 입장

* 거래별 덤핑마진(내수판매가격−수출가격)산정시 (−)의 값을 0으로 취급, 이의 가중평균인 최종덤핑마진을 상승시켜 높은 반덤핑관세 부과

** 산업피해율과 덤핑마진율을 비교하여 더 낮은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결국 보다 낮은 수준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 **(호주 등) 국내산업보호의 필요성이 큰 국가**는 **WTO 협정문상의 권리·의무*를 준용**하자는 입장

* WTO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 포럼 논의결과

○ FTA하에서 **무역자유화 촉진 및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무역구제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 **향후 DDA 협상 결과 등을 토대로 모범관행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합의

2. 재심(sunset review)관련 이슈들

□ 주요 쟁점

○ **기존 규제조치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는 **재심의 검토요소 관련 구체적인 WTO 규정이 결여**

○ 이에 따라, 각국 조사기관에 **많은 재량이 부여**되어 **수입규제조치를 남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객관적인 재심 기준 마련의 필요성 대두**

□ 각국의 주요견해

○ **(WTO)** 오랜기간 지속되는 반덤핑 조치의 문제점 제기, 가능성 판단기준, **덤핑마진의 재산정 필요성, 누적적 평가의 가능성** 등의 이슈 제기

○ **(한국) 덤핑가능성** 관련 **재산정된 덤핑률, 수입물량의 증단 및 감소 여부, 수출자의 영업상황·공급자 시장상황** 등 종합적 고려

- **피해가능성** 관련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이후의 **시장상황*** 및 **국내 산업의 피해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

* 관련 산업의 특징 및 수급현황, 대상물품이외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수입물량의 증대 가능성, 국내동종상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 **(미국) 수입물량**(유휴생산설비유무, 재고 수준), **가격**(덤핑률, 국내동종상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자국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피해가능성 판단

□ 포럼 논의결과

○ **각국의 재심기준에 대한 경험공유**를 통해 **객관적인 재심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진행되는 DDA 협상을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

별첨 3 FTA협정문별 WTO규정과 차별조항

구분		한-칠레 ('04.4 발효)	한-싱가폴 ('06.3 발효)	한-EFTA ('06.9 발효)	한-아세안 ('07.6 상품발효)
반덤핑/ 상계관세		WTO 준용	① 제로잉 금지 ② 최소부과원칙	① 최소부과원칙 ② 조사개시전 통보 및 협의	WTO 준용
다자 세이프가드		WTO 준용	WTO 준용	-	WTO 준용
양자 세이프가드	대상	농산물	상 품	상 품	상 품
	적용 요건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 /시장교란/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조치 수단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조치 기간	-	2+2	1+2	3+1
	조사 기간	-	1년	-	-
	재발동	-	-	최소 3년동안 재발동 금지	WTO준용
	보상/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잠정 조치	120일이내	200일이내	200일이내	WTO준용
	존속 기간	-	-	5년후 검토, 2년주기 검토	관세 감축/철폐 종료 후 7년간
무역구제 위원회		-	-	-	-

구분		한-미국 ('07.6 서명)	한-인도 ('10.1 발효)	한-EU ('11.7 잠정발효예정)	한-페루 ('10.11 가서명)
반덤핑/ 상계관세		① 조사개시전 통보 및 협의 ②가격인상약속/ 사전물량합의	<조건부*> ①조사개시전 통보 ②제로잉금지 ③최소부과원칙 ④조치종료후 재발동 금지(1년간)	①조사개시전 통보/협의 ②공익고려 ③재심시 미소마진 적용 ④최소부과원칙 ⑤누적평가시 주의 의무	①최소부과원칙 ②상계관세 조사개시전 통보 및 협의 ③조사개시 후 조사협력조항(상대국에게 질의서 및 수출자/생산자 리스트 통보 등)
다자 세이프가드		재량적 적용배제	재량적 적용배제	조사개시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 제공	재량적 적용배제
양자 세이프가드	대상	상 품	상 품	상 품	상 품
	적용 요건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심각한 피해·우려/실질적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인과관계	절대·상대적 수입증가 /심각한 피해·우려/ 실질적 인과관계
	조치 수단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관세인하 정지 관세인상
	조치 기간	2+1	2+2	2+2	2+2
	조사 기간	1년	1년	1년	1년
	재발동	재발동 금지	최소 2년, 조치기간 만큼 재발동금지	재발동 가능	최소 1년, 조치기간 만큼 재발동 금지
	보상/ 보복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절대적 수입증가의 경우 2+1년간 보복금지	발동시 보상협의 * 30일 이내 미합의시 24개월간 보복면제	동등한 보상, 동등한 보복 * 보상보복 전 서면통보
	잠정 조치	200일 이내 조사개시 45일 후	200일 이내	200일 이내	180일 이내
	존속 기간	협정발효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기간동안	관세철폐 종료후 10년간	관세철폐 종료후 10년간	협정발효 후 10년,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관세철폐 후 5년간
무역구제 위원회		설립·운영	-	Working Group 형태로 운영	협력 메카니즘 설립·운영 가능

* 한인도 CEPA : DDA규범협상결과가 CEPA협정문보다 우선함. DDA협상타결이 CEPA 발효 후 2년 이상 지연될 경우 동조항의 철회 요청가능